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36
----------	-------

발의연월일 : 2025. 11. 7.

발 의 자 : 이해민 · 정춘생 · 강경숙
서왕진 · 신장식 · 박은정
김선민 · 차규근 · 김준형
황운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법원의 재판이 명백히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구제수단이 없음.

특히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이후 모든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되어 사실상 입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이에 대한 헌법적 통제나 수정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 즉 제한 없는 권력의 방치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이 헌법을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를 통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법정안에서도 구현하며, 국민이 헌법 주체로서 스스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될 것임(안 제45조 등).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본문 중 “여부만을”을 “여부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위헌결정”을 “위헌결정(한정위헌·한정합헌 결정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를 “헌법재판소에”로 한다.

제6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71조제3항 중 “헌법소원의”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로,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당해재판 및 법원의 표시
3. 쟁점사항

4. 쟁점사항의 중요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73조제1항에 따라 심판회부결정을 받은 청구인은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쟁점사항에 관한 청구 이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2조제3항제1호 중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를 “아니하고”로 한다.

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 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는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 재판부가 담당한다.

② 재판부는 쟁점사항의 중요성에 관하여 평의하여 4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하는 경우 결정으로 심판에 회부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60일이 지날 때까지 심판회부결정이나 제4항에 따른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심판부회부 결정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④ 심판청구의 각하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을 준용하되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2조의3(가처분)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중급결정의 선고
시까지 당해 확정재판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 전단 중 “지정재판부”를 “지정재판부(제72조의2의 경우
재판부도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후단의”를 “및 제72조의2제
2항 후단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2조제4항
에”를 “제72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항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재판의 당
사자

제7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재판부에 심판회부된 경우에는 제27조
제2항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제75조제6항 중 “제68조제2항에 따른”을 “제68조제2항 및 재판에 대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재판부는 당해 재판을
파기하고 당해 법원에 환송할 수 있다. 환송법원은 재판부가 파기의
이유로 삼은 판단에 기속되어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u>여부만을</u>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제45조(위헌결정) ----- ----- ----- <u>여부를</u> ----- ----- ----- ----- ----- -----.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u>위헌결정</u> 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 ⑤ (생략)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 --- <u>위헌결정(한정위헌·한정합헌 결정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u>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u>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8조(청구 사유) ① ----- ----- ----- ----- <u>헌법재판소에</u>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청구기간) ①·② (생략)

<신 설>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② (생략)

③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72조(사전심사) ①·② (생략)

제69조(청구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당해재판 및 법원의 표시

3. 쟁점사항

4. 쟁점사항의 중요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73조제1항에 따라 심판회부결정을 받은 청구인은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쟁점사항에 관한 청구 이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2조(사전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략)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 4. (생략)

④ ~ ⑥ (생략)

<신설>

같음)

③ -----

--.

1. -----

-----아니하고-----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2조의2(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사전심사) 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는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 재판부가 담당한다.

② 재판부는 쟁점사항의 중요성에 관하여 평의하여 4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하는 경우 결정으로 심판에 회부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60일이 지날 때까지 심판회부결정이나 제4항에 따른 각하결정이 없는

<신 설>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
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
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
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
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
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제4
항 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

때에는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심판부회부 결정에는 이유
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④ 심판청구의 각하에 관하여
는 제72조제3항을 준용하되 관
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2조의3(가처분)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
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중
국결정의 선고시까지 당해 확
정재판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
정을 할 수 있다.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① 지정재판부(제72조의2
의 경우 재판부도 같다)-----

-----.

및 제72조의2제2항 후단의---

② -----
제72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
항에-----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설>

제74조(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 ① · ② (생략)

<신설>

제75조(인용결정) ① ~ ⑤ (생략)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생략)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3.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재판의 당사자

제74조(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재판부에 심판회부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제75조(인용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68조제2항 및 재판에 대한-----
-----.

⑦ (현행과 같음)

⑧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 재판부는 당해 재판을 파기하고 당해 법원에 환송할 수 있다. 환송법원은 재판부가 파기의 이유로 삼은 판단에 기속되어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u><신 설></u>	<u>⑨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u>
--------------------	--